

WORLD BRIEF

ISSN 3092-0620

제1호
2025.10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Global
Rights
Compliance

김정은 정권 하의 공격 양상과 범위

초국가적 억압

¹
UN Human Rights Council,
Fifty-sixth sess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rene Khan,"
A/HRC/56/53, April 26, 2024.

²
G7 Leaders' Statement on
Transnational Repression
(June 17, 2025).

³
Nate Schenckan and
Isabel Linzer, *Out of Sight,
Not Out of Reach: The
Global Scale and Scope of
Transnational Repression*
(Freedom House, 2021).

독재자들은 해외에서 자신의 부패, 무능, 폭정이라는 치부를 드러내거나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외국 법역에서 범죄와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은 물리적 폭력, 디지털 위협, 법적 위협, 대리 억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¹⁾

국제사회는 국가안보, 주권, 인권, 국제법 원칙에 대한 이 점증하는 위협을 가리켜 "초국가적 억압 (Transnational Repression, TNR)"이라 부른다.²⁾

2021년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4년~2020년 기간에 31개국 정부가 79개국에서 자행한 직접적·신체적 초국가적 억압 사건(암살, 폭행, 구금, 추방 등) 608건을 조사한 획기적 보고서를 발간했다.³⁾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초국가적 억압을 자행하는 6개 주요국인 중국, 르완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사례를 상술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인구 이동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 운동가들의 국제활동 확대에 대한 각국 정권의 위기의식을 높인 한편 저비용으로 억압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국가적 억압이 '정상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항 능력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진 VX 독극물을 이용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및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탈북민 출신 함진우 데일리NK 기자 납치 사건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외에도 지난 수십 년간 적극적으로 초국가적 억압을 저질러 왔으나 많은 경우 책임 있는 기관과 의사 결정자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표적이 된 인사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일정 기간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요원을 검거하기도 하지만 특히 국외에서 횡행하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체계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초국가적 억압의 수법

⁴
Ibid, pp. 9-14. 초국가적 억압 사례는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⁴⁾

초국가적 억압의 수법

'초국가적 억압'은 국가가 자국 영토 밖에서의 비판을 잠재우고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나 망명자를 표적 삼아 폭력, 위협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것

직접 공격

암살, 폭행, 신체 위협,
강제실종 등



타국 끌어들이기

구금, 추방 또는
신병인도 공조



이동능력 통제

여권 무효화,
가족 인질화 등



원거리 협박

대리 억압, 온라인 협박,
스파이웨어 등



- ① **직접 공격(direct attacks)**: 암살, 폭행, 신체 위협, 강제실종, 구금, 추방 등 표적 인물에 대한 신체 공격
- ② **타국 끌어들이기(co-opting other countries)**: 타국 법제도 또는 인터폴 시스템을 악용하여 표적 인물의 구금, 추방 또는 신병인도
- ③ **이동능력 통제(mobility controls)**: 여권 무효화 등으로 표적 인물의 여행 방지, 구금 초래
- ④ **원거리 협박(threats from a distance)**: 온라인 협박 또는 스파이웨어, 본국의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을 통해 본국 법역을 벗어나는 물리적 공격 없이 표적 인물 억압

김정은 통치 기간의 주요 사건

① 직접 공격: 암살, 납치 등

외국에서의 암살이나 납치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표적이 고위급 인사인 경우, 최고 권력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감행되기 어렵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잘 알려진 사례이다.

김정일 시기인 1997년 2월 서울에서 벌어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사살 사건은 한국내 고정 간첩들이 관여했지만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실행을 했던 것에 비해, 20년 후 김정남 독살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이 실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해외 작전 능력과 범위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당국은 2011년과 2016년 국내에서 유명 탈북민들에 대한 북한 요원의 암살 시도를 적발했다.⁵⁾ 북한은 이외에도 해외에서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을 돕는 사람에 대해서도 암살과 납치를 일삼고 있다.

2016년 5월 탈북민 출신 고현철 씨가 중국에서 유인, 납치된 것과 유사하게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 2014년 10월 김국기 선교사, 2014년 12월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 요원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 2011년 8월 중국 단둥에서 김창환 목사, 2016년 4월 중국 창바이 현에서 조선족 한충렬 목사가 북한 요원에 의해 살해되었다.

② 타국 끌어들이기: 구금, 추방 또는 신병인도 공조

독재자들은 체류국 정부와 손잡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표적이 된 인사의 이동을 억제시키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요청하여 이들의 망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북한 당국은 북한으로부터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는 인사들에게 부패, 횡령, 마약 등 확인되지 않는 혐의를 씌워 체류국 사법당국에 허위 신고해 체포되게 하고 검증 절차 및 정식 재판 등 적절한 절차 없이 송환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북한 당국이 추적하는 표적 인사의 주요 체류국인 중국, 러시아의 경찰 등 사법공무원들은 이들을 추적, 체포, 강제 송환하는데 관행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5

김정우, “박상학뿐 아니라, 김성민·이민복도 노렸다,” 월간조선, 2011년 11월;
최우석, “제2의 이한영 사건을 막아라!” 월간조선, 2016년 8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체결한 국경보안협정, 사법공조조약 등 양자조약은 탈북민과 망명을 시도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구금, 추방 및 인도를 가능하게 한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2015년 이후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불법 입국자 및 체류자의 이송과 인수, 수형자 인도에 관한 조약 4개를 체결하였다. 더군다나 2024년 6월 김정은과 푸틴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사법공조와 수형자 이송 분야에서의 합의 이행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

③ 이동능력 통제: 여권 압류와 북한에 남겨둔 인질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 학생, 무역 일꾼,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 사람의 여권은 압류되어 북한 당국이 보관한다. 따라서 이들이 허락 없이 숙소나 작업장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할 경우, 불법 체류자로 현지 당국에 검거될 수 있다. 해외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민 대부분은 파견지에 도착한 이후로는 자신의 여권을 다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해외로 파견된 북한 사람은 북한에 가족이 인질로 남겨져 있고 본인의 충성 보증인이 있어서 탈출을 시도하면 이들이 처벌받게 된다.

④ 원거리 협박: 대리 억압 및 온라인 위협

2010년대 중반 김정은은 북한에 남은 가족을 인질로 삼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재입북을 유도하여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대리 억압을 통해 북한 당국은 탈북민이 국내 탈북민, 탈북 브로커와 북한내 협력자 등 다른 표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탈북민을 납치하기 쉬운 곳으로 유인하도록 만든다.

한국 정착 10년째인 2018년 초, 탈북민 A는 북한에 남겨둔 형으로부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북중 접경지역으로 갔다. 형과 함께 나온 조선인민군 보위국 지도원 B는 A에게 자기 일을 도와 달라고 했고 A는 형과 가족을 보호해준다는 조건으로 승낙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A는 다른 탈북민과 그들의 북한내 가족, 탈북 브로커 등에 대한 정보를 국제전화와 중국의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해 B에게 전달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는 재판에서 형의 안위가 염려되어 북한 당국과 협조하기 시작한 정상을 참작해 최하형인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B는 A에게 ① “동까모”(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에 대한 정보, ②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뽑는 사람들(탈북브로커), ③ 그 사람들이 줄을 대는 북한 경비대 군인에 대한 정보, ④ 북한군의 자료를 미국이나 남한 쪽에 넘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한국이나 외국 방송에 출연해 북한 체제나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거나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증언한 탈북민은 이메일 계정에 침투하거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탈취하려는 해킹 공격에 시달린다. 컴퓨터나 휴대폰이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어도 인지하지 못하면 소통하는 다른 탈북민과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개인정보와 연락 내용도 탈취된다. 본인을 사칭한 메시지에 지인들이 속거나 피싱 공격을 받으면 전화번호나 온라인 계정을 바꾸게 되어 연락이 소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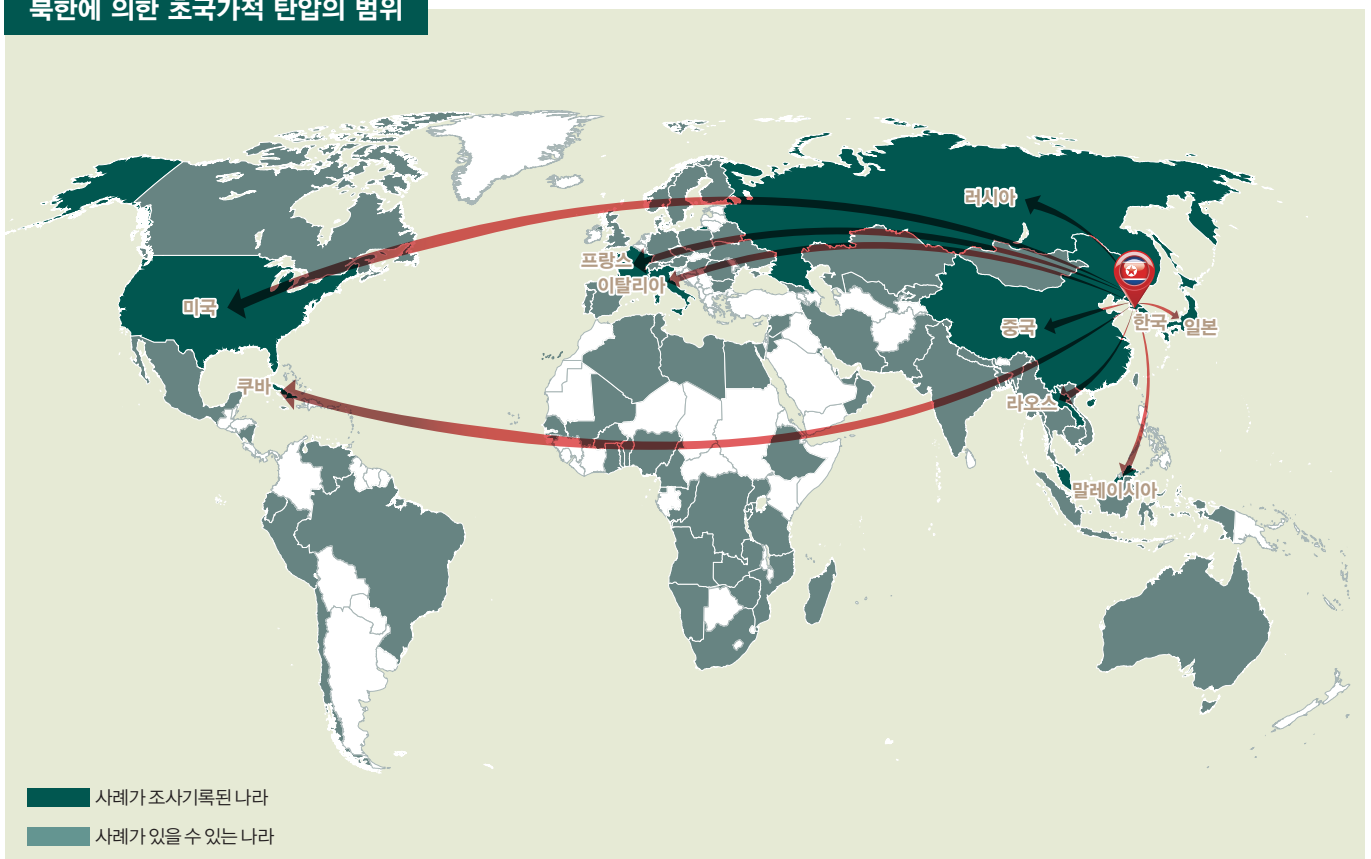
북한은 2013년-2014년 기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진술하고 조사 활동을 도왔던 탈북민을 지목해 '우리민족끼리TV' 등 대외선전매체에서 공개적으로 협박했다. 북한내 가족과 지인의 비방 발언이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면 탈북민의 불안감과 고립감은 커지고 공개 활동과 발언을 계속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북한의 긴 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은 한반도나 아시아 대륙을 넘어선다. 한국이나 해외에 정착한 탈북민이나 중국,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사람들은 망명하려 할 경우 북한의 국제 평판을 실추시키거나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 당국의 표적이 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는 해외의 자국민을 통제하고 망명을 차단하기 위해 국외 감시망과 억제 장치를 수십 년간 정교하게 구축해 왔다. 북한의 긴 팔은 북한과 체제 성격이 유사하고 상호 이익이 두터울수록, 혹은 치안 수준이 낮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망이 약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기에 본국 기관원들은 감시망을 우회하여 이들을 표적화하기 쉬워진다. 북한은 해외 곳곳에 설치한 대사관과 영사관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외교 공관은 단순한 외교 거점이 아니라, 초국가적 억압을 실행하는 거점 기능도 한다. 그 결과 북한의 억압적 영향권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간다.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의 범위



민주주의 체제라고 해서 안전지대인 것은 아니며, 북한은 이곳을 향해서도 반체제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북한이 외교공관, 무역대표부, 해외파견 노동, 유학 등으로 자국민을 파견한 나라는 누적 약 90개국에 이른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25년 10월까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이탈리아, 프랑스, 쿠바, 미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북한에 의해 발생한 초국가적 억압 사례를 기록하였지만 더 많은 나라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사회의 대항조치

미국의 초국가적 억압 전반에 대한 대항조치는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미국 법무부는 FBI와의 공조 속에 중국 정부가 해외 반체제인사를 부패 혐의로 강제 송환시키는 여우사냥 작전(Operation Fox Hunt) 관련 중국인 쑤호이잉(孫海鷹, Sun Hoi Ying)을 기소했다.⁶⁾ 미 의회는 2021년 '초국가적 억압 책임규명 및 방지법(TRAP Act)'을 제정했다.

2023년 6월, 46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유럽평의회(CoE) 의원회의는 초국가적 억압을 법의 지배와 인권에 대한 위협으로 확인했다.⁷⁾ 또한, 27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EU 회원국의 사법 당국이 인권 옹호자에 대한 초국가적 공격(transnational attacks)의 보고, 수사, 가해자 식별을 위한 훈련과 재원을 늘릴 것을 결의했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국가적 억압에 대항할 보편적 규범과 국제적 억지 수단은 미비하다. 특히,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억압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국제공조, 대항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6
US Department of Justice,
"Man Charged with
Transnational Repression
Campaign While Acting
as an Illegal Ag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March
30, 2022.

7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Resolution 2509:
Transnational repression
as a growing threat to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adopted on June
23, 2023.

8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EU
Guidelines on Human
Rights Defenders,"
P9_TA(2023)0086, March
16, 2023.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국제법 재단인 글로벌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는 2024년에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착수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억압의 지속성, 지리적 범위, 피해자 집단, 표적과 여건에 따른 사용 수단과 공격 방식의 변화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항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수집하고, 그 중 구체적 정보나 단서가 있는 사건들을 추려내며, 초국가적 억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요소들과 공격 실행을 위한 수단들의 결합을 분석할 것이다. 북한 외 관련이 있는

나라들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들과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총 3편의 이슈브리프 중 이번 호는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향후 두 이슈브리프에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대항할 필요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 실태를 살펴본다. 우리는 공개출처정보(open-source intelligence)와 비공개출처정보(closed-source intelligence)를 통해 취합한 사건, 인물, 기관 정보와 가능한 대항책을 각국과 유럽연합(EU) 정책 입안자와 공유할 것이다. 2026년에는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대항책을 논의하고, 종합보고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해 국제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 2014년 서울에 설립된 인권조사기록 및 애드보커시 NGO입니다.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다루는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배상을 실현하고 가해자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대규모 잔학행위에 대한 인권 조사기록과 책임규명을 선도하는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합니다.



글로벌라이츠컴플라이언스(GRC) | 2013년 설립된 국제법 재단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통해

책임성을 증진하고, 사법 제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GRC는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 세계, 특히 분쟁 영향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TJWG)

대한민국 서울

웹사이트 www.tjwg.org (한국어) / en.tjwg.org (영어)

이메일 info@tjwg.org

전화 02-722-1162

팩스 02-722-1163